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5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추경호·강대식·강명구

강민국・강선영・강승규

고동진・곽규택・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배혂진 • 백종헌 • 서명옥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이종욱 · 이철규 · 이헌승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조연희 · 주호영 · 진종오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최형두 · 한기호 · 한지아 의원(10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8년 동안 정부에서 13차례나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되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재단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의 방기임.

이에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는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 국회가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도록 재요청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의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이사 추천 요청 및 재단 임원 구성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 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회가 구성되 지 아니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국회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사 추천을 재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이사 추천을 재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 직권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이사 추천 요청 및 재
	단 임원 구성의 특례) ① 통일
	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
	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국
	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
	생한 때에는 국회에 이사의 추
	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사 추천을 재요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이사 추천을 재요청반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사를 추천할 때까지 직권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임명할 수

<u>있다.</u>